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함(제명 변경)
- 나. 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개정)
- 다. 법률 제2조제1의4호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기준을 준용하여 정함(안 제1조의2 신설)
- 라.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요청한 경우 출입항 신고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마.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 바. 법 제29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설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별표5]~[별표8]을 신설함(안 제1

6조~18조 신설)

사. 법 제31조~제32조에 따라 어선소유자의 어선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0조 신설)

아. 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명령, 제출, 검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1조~제23조 신설)

자. 법 제37조에 따라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신설)

차. 법 제39조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해야 할 어선의 선체등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용·작업중지 조치 절차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5조~제28조 신설)

카. 법 제40조~제42조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시 어선소유자의 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업 또는 항행중지 조치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을 신설함(안 제29조~제33조 신설)

타. 법 제43조에 따라 어선원재해에 대한 기록·보존 및 재해 발생 보고 절차 등을 정함(안 제34~제35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에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사업 21억
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출입항신고서
2.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록
3. 그 밖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제1항 중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어선소유자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5와 같고, 그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6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7과 같고, 어선소유자는 어선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어선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18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어선원이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제19조(안전조치)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내 작업환경의 정비
2.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
3. 통행과 승하선 안전
4. 밀폐구역에서 탈출장치
5. 작업장소 및 통로 등의 안전
6. 선외 추락의 방지
7. 그 밖의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보건조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건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2. 선내조명
3. 진동 및 소음의 감소 조치
4. 선내 위생의 유지
5. 통풍 및 환기
6. 식료품 및 식수의 관리
7. 감염방지 및 예방교육
8. 그 밖의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선소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어선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긴급조치사항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따라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의 중지
2. 작업장소에서 어선원 대피
3. 어선원재해발생의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 따라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에게 승무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의 중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3. 그 밖에 보건에 필요한 조치

제25조(선체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39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어선원 안전·보건기준에서 어선의 선체·기계·어구·설비 등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2.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기계 등의 사용금지

제26조(사용의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어선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어선소유자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어선 및 기계·어구·설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어선 및 기계·어구·설비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

는 경우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작업의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제28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어선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29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0조(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

행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31조(조업 또는 항행중지의 해제)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어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어선원중 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어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제32조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제32조(조업 또는 항행중지해제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 검사기관 소속 전문가 및 어선원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대

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34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5조제4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
2. 어선원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35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어선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은 지방해양수청의 장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어선원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16조제1항 관련)

1. 금지표시	101 출입금지 	102 통행금지 	103 금연 
	201 끼임 주의 	202 부딪힘 주의 	203 넘어짐 주의 
2. 경고표시	204 미끄럼 주의 	205 맞음 주의 	206 추락 주의 
	301 안전모 착용 	302 안전장화 착용 	
3. 지시표시	401 응급처치 	402 구명조끼 	403 구명뗏목 
	404 구명부환 	405 화재경보기 	406 소화기 
4. 안내표시			

※ 비고: 안전보건표지는 한국산업표준 (KS S ISO 7010 : 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지-등록된 안전표지)의 안전표지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6]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관련)

분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사용장소예시	형태	색채
				안전·보건 표지일람 표번호	
금지 표지	1.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조타실, 기관실 등 출입 이 통제되어야 할 장소	101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은 빨간색, 관 련부호 및 그림은 검정색
	2. 통행금지	작업의 안전상 통행이 제한되 어야 하는 구역	어구 투망(투승) 구역, 원치 주변부	102	
	3.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밀폐된 구역(선실, 어 창) 및 기관실내	103	
경고 표지	1. 끼임 주의	작업자 신체가 기기 및 설비의 회전부에 끼일 우려가 장소	어로설비 주변 및 투/양 망 갑판 구역	201	바탕은 노란색, 기 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2. 부딪힘 주의	작업자의 움직임, 동작으로 접 촉하거나 신체 동요로 부딪힐 우려가 있는 장소	선내외 통로	202	
	3. 넘어짐 주의	작업자가 평면, 경사면 또는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갑판 및 현측 통로, 계 단 등	203	
	4. 미끄럼 주의	이물질에 의하여 작업자가 미 끄러질 우려가 있는 장소	갑판 및 어획물 처리 구역	204	
	5. 맞음 주의	고정되어 있는 물체가 충격,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여 작업자 를 가해할 수 있는 장소	어로 설비 주변부 및 계선줄 작업 구역	205	
	6. 추락 주의	작업자가 충격 또는 신체 동요 로 인하여 해상으로 추락 우려 가 있는 장소	갑판 및 현측 통로 주 변	206	
지시 표지	1. 안전모착용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어로작업 구역	301	바탕은 파란색, 관 련 그림은 흰색
	2. 안전장화착용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어획물 처리 구역	302	
안내 표지	1. 응급처치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장비 보관 구역	401	바탕은 녹색, 관련부 호 및 그림은 흰색 다만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의 경우 바탕 은 빨간색, 관련 부 호 및 그림은 흰색
	2. 구명조끼	구명조끼 보관되어 있는 장소		402	
	3. 구명뗏목	구명뗏목 설치장소		403	
	4. 구명부환	구명부환 설치장소		404	
	5. 화재경보기	화재경보기 작동장치 주변부		405	
	6. 소화기	소화기 설치장소		406	

[별표 7]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16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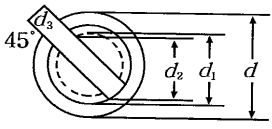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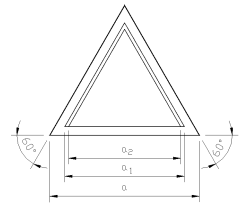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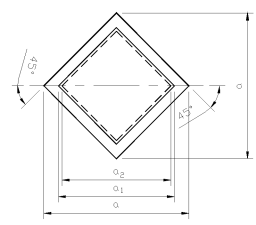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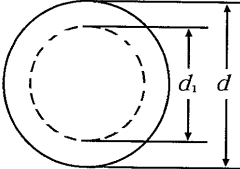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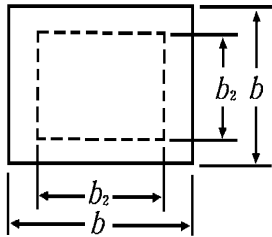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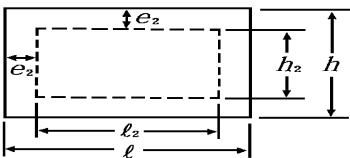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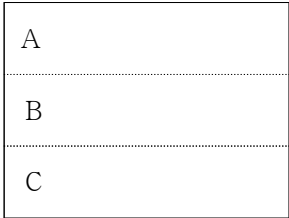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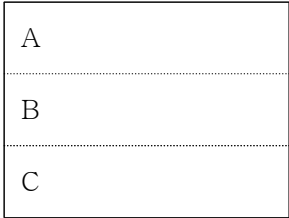
(참 고)

1. 허용 오차 범위 $H=\pm 2$, $V=\pm 0.3$, $C=\pm 1$ (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별표 8]

어선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18조제1항 관련)

번호	기본모형	규격비율(크기)	표시사항
1		$d \geq 0.025L$ $d_1 = 0.8d$ $0.7d < d_2 < 0.8d$ $d_3 = 0.1d$	금 지
2		$a \geq 0.034L$ $a_1 = 0.8a$ $0.7a < a_2 < 0.8a$	경 고
		$a \geq 0.025L$ $a_1 = 0.8a$ $0.7a < a_2 < 0.8a$	
3		$d \geq 0.025L$ $d_1 = 0.8d$	지 시
4		$b \geq 0.0224L$ $b_2 = 0.8b$	안 내
5		$h < l$ $h_2 = 0.8h$ $l \times h \geq 0.0005L^2$ $h - h_2 = l - l_2 = 2e_2$ $l/h = 1, 2, 4, 8$	안 내

번호	기본모형	규격비율(크기)	표시사항
		(4종류)	
<u>6</u>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1. 모형크기(가로 40cm, 세로 25cm 이상) 2. 글자크기(A: 가로 4cm, 세로 5cm 이상, B: 가로 2.5cm, 세로 3cm 이상, C: 가로 3cm, 세로 3.5cm 이상)	관계자외 출입금지
<u>7</u>	 모형 안쪽에는 A, B, C로 3가지 구역으로 구분하여 글씨를 기재한다.	1. 모형크기 (가로 70cm, 세로 50cm 이상) 2. 글자크기 (A: 가로 8cm, 세로 10cm 이상, B, C: 가로 6cm, 세로 6cm 이상)	관계자외 출입금지

(참고)

1. L은 안전·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 d, e, h, l 은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 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서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서

어선명:

소재지:

어선소유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령하니 구체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라며, 재해율이 감소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선항목
일반사항	
중점 개선사항	
그 밖의 사항	

※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서

제 호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

어선명:

소재지:

전화번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 []제1항 []시정조치
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에 따라 다음 대상에 []작업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5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대상	
안전·보건기준 위반내용	

※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어선원중대재해 시 조업 또는 항행중지 명령서

제 호

어선원중대재해 시 조업 또는 항행중지 명령서

어선명:

소재지:

전화번호:

아래 작업은 어선원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중지를 명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업 또는 항행 중지 범위	[] 전면 []부분(구체적으로 기재)
조업 또는 항행 중지 사유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이 명령은 어선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장

직인

어선원안전감독관

(인)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 전부 해제신청서
[] 일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	------	-----	---------

어 선 개 요	어 선 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어선원 수:

조업 또는 항행중지 해제요청 범위 및 개선사항	조업 또는 항행중지 해제요청 범위[별지작성 가능]
	어선원안전·보건조치 개선사항 [별지작성 가능]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조업 또는 항행중지 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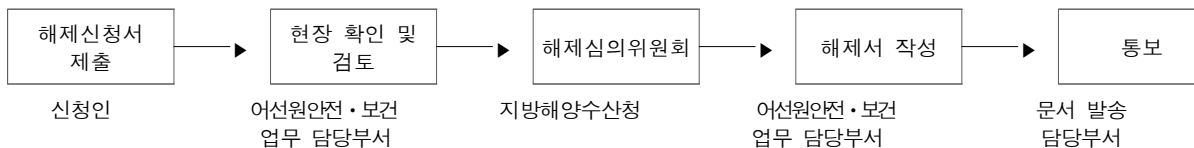
제출자(어선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어선원안전·보건조치 개선내용 증명서류(사진 등) 2. 어선원 의견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어선안전조업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u>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u>」 ----- -----. <u>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u> 「<u>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4호에서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u>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u> 2. <u>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u> 3. <u>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u>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 신고(확인)서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및 출장소로 한정한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신 설>

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2조(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자료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자료는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라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의 어선이 조업 또는 항행할 수 있는 해역, 기간 및 조업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생략)

<신설>

같다.

1. 어선출입항신고서

2. 제2조제5항에 따른 어선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록

3. 그 밖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어선소유자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

<신 설>

협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6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5와 같고, 그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6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신 설>

7과 같고, 어선소유자는 어선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17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어선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어선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어선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

<신 설>

<신 설>

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18조(어선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
별로 별표 8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어선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어선원이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
야 한다.

③ 어선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어선안전보
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
며, 어선안전보건표지 전체 규
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
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어선안전보건
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
야 한다.

제19조(안전조치) 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안전조치에는 다음 각

<신 설>

<신 설>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내 작업환경의 정비
2.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 장치,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
3. 통행과 승하선 안전
4. 밀폐구역에서 탈출장치
5. 작업장소 및 통로 등의 안전
6. 선외 추락의 방지
7. 그 밖의 어선원재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조(보건조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건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취급
2. 선내조명
3. 진동 및 소음의 감소 조치
4. 선내 위생의 유지
5. 통풍 및 환기
6. 식료품 및 식수의 관리
7. 감염방지 및 예방교육
8. 그 밖의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법 제34조제1

<신 설>

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어선소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어선원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23조(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어선소유자에

<신 설>

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
해양수산청의 장은 어선안전보
건개선계획서에 제22조제2항에
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어
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전문기관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24조(긴급조치사항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따라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
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할 급박
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의 중지
2. 작업장소에서 어선원 대피
3. 어선원재해발생의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
해양수산청의 장에게 보고
4.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37조제2항 따라 어선소
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
선원에게 승무 중 부상 또는 질
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신 설>

<신 설>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의 중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

3. 그 밖에 보건에 필요한 조치

제25조(선체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39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
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어선원 안전·보건기준에서
어선의 선체·기계·어구·설
비 등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
조치 또는 보건조치

2.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현
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
려가 높은 기계 등의 사용금
지

제26조(사용의 중지) ① 해양수산
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
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
용중지명령서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
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

<신 설>

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어선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어선소유자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어선 및 기계·어구·설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어선 및 기계·어구·설비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작업의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

<신 설>

<신 설>

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제28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어선소유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어선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29조(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 설>

<신 설>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
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0조(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
업 또는 항행중지를 명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서를 발
부해야 한다.

제31조(조업 또는 항행중지의 해
제)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중
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하여 어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해제신
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
하여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어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제32조에 따른 조업 또는 항행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신 설>

제32조(조업 또는 항행중지해제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지방해양수산청의 장, 검사기관 소속 전문가 및 어선원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

<신 설>

<신 설>

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업 또는 항행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어선원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선소유자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34조(어선원재해 기록 등)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 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35조제4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어선의 개요 및 어선원의 인적사항

2. 어선원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어선원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어선원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35조(어선원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선원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

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어선원재해조사표에 어선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어선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어선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어선원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선원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은 지방해양수청의 장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어선원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